# 작은도서관진흥법

박 소 희

### 변화의 원인 (객관적 환경)

- 공공도서관의 확대
-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 양적 확대
- 생활형SOC조성사업- 도서관 (작은도서관 포함),공간의 복합화
- 문화예술진흥법 다양한 생활문화예술공간 확대
- 일-가정 양립 정책 공동육아나눔터, 돌봄센터
- 도서정가제 시행 독립출판물 , 지역작은책방
-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동아리, 대한민국독서대전, 책의해, 출판지원 (세종문고, 문학나눔)
- 마을지원센터, NGO지원센터등 중간거버넌스 조직의 확대

## 변화의 요인 (주체적 환경)

- 자체 조직 운영의 주체 재생산 구조 상실
- 90년대 작은도서관 활동의 주축 타 영역으로 활동 이전
- 도서관과 시민활동의 영역 사이에서의 정체성 고민
-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와 재취업
- 인구의 감소 , 저출산 노령화
- 공, 사립 작은도서관 인력 확보, 주민 자율적 운영의 한계
- 운영의 철학을 지속화할 수 있는 이론화, 교육 및 조직력 약화
- 개별화

###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면 개정(안) 주요 내용

#### 작은도서관 정의

- 공립작은도서관
- 사립 작은도서관
- 사서 등 전문직원

#### 작은도서관 지원

- 작은도서관의 설립과
-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
- 작은도서관의 정보화
- 사서 등 전문직원의 확보
-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

#### 작은도서관 전담부서

-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
-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지원
-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 장 모니터링
-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지원
-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
-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
-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면 개정 이후

#### [작은도서관 환경]

- 시설 -99제곱미터
- 장서 -3,000권
- 인력 -사서 , 전문인력
- 동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설·장서·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하고, 그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 등을 하도록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,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립·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·장서·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.

제 3 8 4 회 국 회 (임시회)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의견서 중에서

-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
- 무엇을 하는 공간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가?
- 전문인력 = 일자리 = 인력지원 = 임금체계와 자격의 기준
- 개정작은도서관진흥법 제8조(작은도서관업무)
- 1. 주민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ㆍ정리 및 제공
- 2.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
- 3.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및 독서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
- 4. 그 밖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
- 제9조 (운영지원)
-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- 1.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
- 2. 작은도서관의 정보화
- 3. 사서 등 직원의 확보
- 4.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

제21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작은도서관 전담부서 \_\_\_\_\_ 작은도서관지원센터 (중간지원조직) \_\_\_\_ 지역협의회

- ② 지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
- 2.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지원
- 3.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현장 모니터링
- 4.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
- 5. 작은도서관 홍보 및 기념행사
- 6.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
- 7.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그 밖에 지원전담부서의 설립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